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220 제출연월일: 2024. 7. 24.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조(「산림보호법」의 개정)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10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

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이 법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자(제2호의 경우는 법인인 목재	
생산업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l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	
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	3
치지 못하게 된 경우 <u><단서</u>	
<u>신설></u>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
	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나무병원	등) ①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	2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	
우 <단서 신설>	<u>다만, 「소상공인기본법」</u>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
	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	②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	
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	1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u><단서</u>	다만,
<u>신설></u>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
	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u>는 예외로 한다.</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등은 석재채취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	,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재채	
취업등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요건에	5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u><단서</u>	<u>다만,</u>
<u>신설></u>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
	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6. • 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안 제25조제2항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1		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1	제1호	록 하던 것을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함.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제2항 제1호	제3호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재처분 유예에 따른 과징금 부과·수납 액수 변화 기술적으로 추계 불가

2. 상세 사유

- 안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처분 유예의 대상·기간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음.
 - *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
- 과징금 부과 금액의 변동은 없고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규정되는 것으로, 실제 부과되는 금액에 변화가 없고, 부과건수 변화도 예측이 곤란하여 기술적인 추계는 불가

Ⅲ. 부대의견

O 해당 없음.

Ⅳ.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설진명	고분아	김점복	안병기(직무대리)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분아	042-481-4187	boonah@korea.kr